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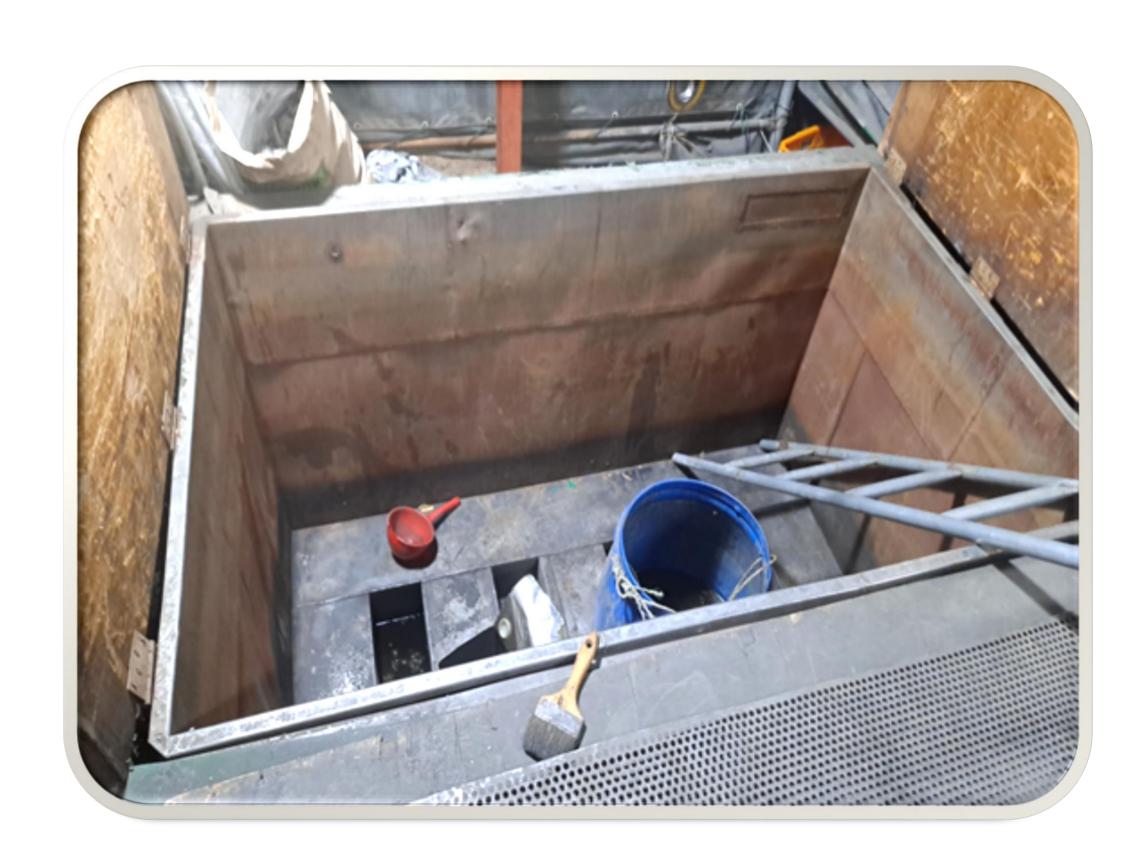
세척조청소중사망

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직종
중독	사망	57세	생산

2022. 03. 00.(토) 09:30경 인천시 소재 0 0 0 이에 서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세척조 내부 청소 를 위해 세척조에 남은 디클로로메탄을 바가지 로 퍼내는 중 쓰러져 사망함



작업상황

비정상작업

- (**정상**)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척조 내부 물질 제거작업 실시
- (**비정상**)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세척조 내부에서 단독으로 물질 제거작업 실시

발생원인

1 직접원인

- (**개인보호구**) 작업자가 유해물질 중독에 대비한 방독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세척조 내부에서 디클로로메탄 제거 작업 실시

기여요인

- (**환기설비**) 세척조 상부에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 위치가 높고 설비 입구에 간섭물이 설치되어 환기시설의 역할이 불가능함
 - ① 세척조 입구로부터 약 2.6 m 상부에 환기설비 설치
 - ② 호이스트 이동을 위한 H-Beam 이 환기시설 입구에 설치되어 간섭
- (**작업자 교육**)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유해물질 취급상 주의사항, 취급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

예방대책

1 관리대상유해물질관계설비설치철저
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증기 등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적절히 설치

2 개인보호구착용철저

- 디클로로메탄 취급 시 방독마스크 등 유해물질로 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

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실시

-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해물질의 특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,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교육 실시

4 세척조청소방법개선

- 디클로로메탄 배출을 위한 배출구를 세척조 하단에 설치하는 등 물질 배출 방법 보완
- 세척조 청소 시 내부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청소작업을 실시 하도록 청소방법 개선



